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2808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행

변론 종결2021. 7. 8.

판결 선고2021.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와 2016. 6. 29. 접수 제353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20. 11. 17. 현재 B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피고는 B의 누나이다.

양도소득세	2009	2009. 12. 31.	2016. 6. 30.	375,189,610	575,088,440
-------	------	---------------	--------------	-------------	-------------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산지'라고 한다)의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2016.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산지의 자신의 지분 모두를 매매대금 3,300만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B은 위 매매대금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37,518,960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산지의 1/2 지분의 시가는 29,469,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비록 이 사건 처분행위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염가로 행하여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산지의 1/2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0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산지의 1/2 지분의 시가는 29,469,3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이 당시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한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부과된 37,518,960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점,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한 매매대금 3,300만원은 위 시가 29,469,300원을 상회하는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의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손승우

별지